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조웅 의원입니다.
- 본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본 조례안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임 규정 없이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여 이를 해소하며,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근거 법령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하며, 부담금 징수에 관한 근거 법령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위임 없는 과태료 부과 규정과 과태료 징수에 관한 권한 위임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